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2019. 8. 20. 공포)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그 내용,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의 내용 및 절차(안 제10조의3)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에 대해 모니터링 기본계획 수립·보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의무 등을 부여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① 법 제18조의3에 따른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기본 모니터링 :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본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 영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3(인터넷을 이용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① 법 제18조의3에 따른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기본 모니터링 :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본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 영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고, 해당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연 락 처	(044) 244-3415